

한경훈 / 2월 / 기초 GS+ / 17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534545	20.5	12	15.5	9.5	57.5	1	1.43%	5	70
535519	19	12	17.5	6.5	55	2	2.86%	6	
535140	19.5	11	14.5	8.5	53.5	3	4.29%	6	
535221	18.5	8	17	10	53.5	3	4.29%	6	
536249	13	11.5	19	9	52.5	5	7.14%	5	
535461	16.5	10.5	16	9	52	6	8.57%	6	
535316	19.5	12.5	15	4	51	7	10.00%	7	
535347	18	11.5	16	5.5	51	7	10.00%	5	
535211	19	11.5	13.5	5.5	49.5	9	12.86%	5	
535278	19.5	11	12.5	6	49	10	14.29%	6	
536160	15	11.5	16	5.5	48	11	15.71%	6	
535322	14	12	14.5	7	47.5	12	17.14%	5	
535412	15	12.5	15.5	4.5	47.5	12	17.14%	6	
535470	16.5	12.5	12.5	6	47.5	12	17.14%	6	
535513	15.5	12	13.5	6.5	47.5	12	17.14%	5	
535596	17	11.5	12.5	5.5	46.5	16	22.86%	5	
535192	15	9	13.5	8.5	46	17	24.29%	4	
535602	15.5	10.5	13.5	6.5	46	17	24.29%	5	
535464	15	11	11.5	6.5	44	19	27.14%	4	
535253	15	10.5	13	5	43.5	20	28.57%	4	
538232	17	9.5	14.5	2.5	43.5	20	28.57%	5	
535617	15.5	12.5	10	5	43	22	31.43%	6	
534775	17.5	8.5	16	0.5	42.5	23	32.86%	5	
535329	18	11.5	7.5	5.5	42.5	23	32.86%	5	
535462	17.5	12	10	3	42.5	23	32.86%	5	
535527	14.5	9	14	5	42.5	23	32.86%	6	
535528	17	10.5	14	1	42.5	23	32.86%	5	
535104	19	11	12.5	0	42.5	23	32.86%	6	
535321	18	10	10	4	42	29	41.43%	5	
536037	17.5	11.5	13	0	42	29	41.43%	4	
535345	19.5	11.5	10.5	0	41.5	31	44.29%	6	
535258	13.5	10.5	13.5	3.5	41	32	45.71%	5	
535539	12	9	13	7	41	32	45.71%	6	
535882	17	8	11	4.5	40.5	34	48.57%	5	
536112	16.5	12	12	0	40.5	34	48.57%	6	
535540	10.5	8.5	15	6	40	36	51.43%	5	
535183	18	11	10.5	0	39.5	37	52.86%	5	
536181	15	11.5	11	2	39.5	37	52.86%	5	
535511	15	11.5	12	0	38.5	39	55.71%	5	
534964	19	10	9	0	38	40	57.14%	6	
535656	16.5	12.5	8	0	37	41	58.57%	4	
535310	18	10.5	8	0	36.5	42	60.00%	6	
535333	17	5.5	13	1	36.5	42	60.00%	5	
535505	17.5	11.5	7	0	36	44	62.86%	5	
535244	19.5	9.5	6.5	0	35.5	45	64.29%	6	
535960	16.5	9	9.5	0	35	46	65.71%	5	
536093	16.5	9	9	0	34.5	47	67.14%	6	
535647	15	10	6	2	33	48	68.57%	5	
535969	14.5	7.5	8	3	33	48	68.57%	6	
535255	15.5	7	8	1.5	32	50	71.43%	6	
535325	15.5	12	3.5	0	31	51	72.86%	6	
535661	16.5	12.5	0	2	31	51	72.86%	7	
535223	17.5	13	0	0	30.5	53	75.71%	5	
538287	14.5	6	9	1	30.5	53	75.71%	5	
535651	15	9.5	5	0	29.5	55	78.57%	5	
536226	15.5	13.5	0	0	29	56	80.00%	6	
536571	17.5	8	3	0	28.5	57	81.43%	6	
536006	15.5	0	12.5	0	28	58	82.86%	6	
535257	16	0	11.5	0	27.5	59	84.29%	5	
535994	17.5	10	0	0	27.5	59	84.29%	5	
535239	17	9.5	0	0	26.5	61	87.14%	5	
535454	16.5	6	3	0	25.5	62	88.57%	6	

538047	13	9	3.5	0	25.5	62	88.57%	4
535218	14	11	0	0	25	64	91.43%	7
535742	3.5	16	3	1	23.5	65	92.86%	4
535668	13.5	8	0	0	21.5	66	94.29%	5
535161	12.5	0	8.5	0	21	67	95.71%	5
535311	12.5	8.5	0	0	21	67	95.71%	6
535348	0	5	11.5	2	18.5	69	98.57%	5
535465	0	0	6.5	2.5	9	70	100.00%	4

한경훈/2월/기초GS+/17회/1번	채점자
	이정은

1. 전반적인 총평

익숙하지 않은 논점인 문제였습니다. 다들 생소한 논점이기에 조문 위주로, 답 맞춰서 답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설문 1은 “상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조문 위주로 답안을 기재하시고, 상품별로 나누어서 사안을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설문 2에서 제38조 1항과 제34조 1항 7호에 대한 판단 자체를 누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34조 1항 13호, 20호, 21호 중 판단을 누락하거나 공존동의서 논점 기재를 누락하신 경우에 감점이 있었습니다.

배점이 너무 커서 답안을 구성하시기에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안들을 복습하면서 배점이 큰 문제의 답안 구성을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치를 나열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13호 20호 21호를 따로 빼서 판단하기 보다는 무효심판의 하위 목차로 판단하시는 것이 가독성이 더 좋았습니다.

3. 소결

설문 2에서 점수가 많이 갈렸습니다. 배점이 큰 문제이기에 13호의 부정한 목적 관련 판례를 기재하고 사안 포섭을 두껍게 할 실익이 있습니다.

배점이 클수록, 주 논점을 상위목차로 크게 적어주시는 것이 가독성에 좋습니다.

<p>한경훈/2월/기초GS+/17회/2번</p>	<p>채점자</p>
	<p>이정은</p>
<p>1. 전반적인 총평</p> <p>지리적 표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관련 판례들이 있기에 정리가 필요한 논점에 해당합니다.</p> <p>지리적 표장 단문 문제에서는 적어주어야 할 조문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정리해두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설문 1, 2 모두 답을 틀리신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답은 꼭 맞춰주셔야 합니다!</p> <p>설문 1은 조문 위주로 목차 나눠서 출처리로 치듯이 작성하시면 어렵지 않게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조문이 있는지를 정리해두셔야 합니다.</p> <p>설문 2에서는 12호 전단에 대한 누락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34조 1항 8호와 12호 전단에 대한 판단을 꼭 해야 한다고 체크해두시면 좋겠습니다!</p> <p>등록불가의 답을 맞추셨더라도 12호 전단 기재를 누락하신 경우에는 감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호 전단 후단에 대해서 판단하실 때에는 12호 ‘전단’ 이라고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합니다.</p> <p>3. 소결</p> <p>이번 회차로 상표법 기초 GS 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p> <p>17회차나 되는 긴 강의 들으시고 답안 작성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p> <p>남은 시간 동안 파이팅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p> <p>응원하겠습니다.</p>	

<p>한경훈/2월/기초GS+/17회/3번</p>	<p>채점자</p>
	<p>윤영우</p>
<p>1. 전반적인 총평</p> <p>2개의 설문 모두 조치를 물어봐서 다소 당황하실 수 있으나, 비교적 전형적인 조치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제33조 1항 3호와 7호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조치로서 제33조 2항을 적어주셔야 하는 설문이었습니니다.</p> <p>논점이 어느 정도 제시되어 있으므로 사안 포섭을 잘 하셨는지, 해당하는 판례를 잘 적어주셨는지에 따라 점수가 갈렸습니다.</p> <p>(2) 설문 2</p> <p>침해 여부를 판단하신 후 그에 따른 민사상, 형사상 및 기타 조치를 적어주셔야 하는 설문이었습니니다.</p> <p>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너무 많은 판례를 작성한 답안이 있었는데, 강약 조절이 되어 보이지 않아 아쉬웠습니니다.</p> <p>조치를 작성할 때 조문 병기를 누락한 답안이 많이 있었습니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조치는 많이 출제되므로 이러한 조문은 암기해 놓는 걸 추천 드립니다.</p> <p>3. 소결</p> <p>이번 문제의 경우 다들 논점을 잘 파악하여 정답을 잘 맞춰주셨습니다.</p> <p>그래도 점수가 갈린 포인트는 사안 포섭을 키워드를 포함해 체계적으로 했는지, 필요한 판례를 적절하게 작성했는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p>	

한경훈/2월/기초GS+/17회/4번	채점자
	윤영우

1. 전반적인 총평

3문에 이어 4문에서도 상표법상 조치 문제를 물어봐서 다들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수 조치를 물어보지는 않았기에 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乙의 등록상표에 존재하는 20호, 21호 등의 무효 사유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작성하는 설문이었습니다.

문제에 취소사유에 대한 사실관계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취소사유는 아주 짧게만 검토하셨어야 했습니다.

(2) 설문 2

제35조 1항의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상표법상 조치를 작성해야 하는 설문이었습니다.

조치로서 조약우선권주장출원 기재를 누락한 답안이 몇몇 있었습니다. 조약 당사국에 상표권이 있을 경우,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이 논점이 될 수 있음을 짚고 넘어가 주세요.

일반론을 많이 작성한 답안보다는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답안에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3. 소결

이번 회차에 4문까지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답안이 많이 보였는데, 시간 관리는 계속 문제를 풀어가면서 차츰 나아지니 이번에 답안을 끝까지 작성하지 못하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도 답안 작성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제 - 17]

I (실문4)

6

1. 국제상표등록출원 (실1803168)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인으로서
대한민국은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인은
국내상표등록출원인으로 본다.

2. 실1803268에 따른 출원일 특정.

(1) 실1803268

국제출원서를 본국관청에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
국제사무국에 접수된 경우 본국관청에 제출한 날은
국제등록일이다 (의정서 324) 국제등록일은
국내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2) 시안

영국 특허청에 제출한 날 (2024.3.10) 부터 2개월 이내
2024.4.10에 국제사무국에 접수되었으므로, 2024.
3.10이 국제등록일이고, 이를 국내 출원일로 본다.

3. 대체규정(실1832)에 따른 출원일 특정

(a) 원의 주지 (실1832)

상표의 관리편의를 위해 국내 설정등록된 상표가
있는 경우, 본건을 관국 할 때 출원일을
모름해주는 제도이다

(2) 물건 및 절차.

① 국제등록 명세서와 상품권지가 동일하고, ② 국제등록
상표와 국내등록 상표가 동일하고 ③ 영역간 상호권이
국내상표 등록일 이후 발생 하면 ④ 신청 혹은 직권으로
대체규정이 적용된다.

(3) 개정명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 개정을 반영하여 관련 상품에
상제하여 일부상품이 포함인 경우에도 적용가능하다

(4) 시한.

① 무으로 국내상표권과 국제등록명세서가 동일하다.
② 'Barbour' 로 상표도 동일하고 ③ 국제등록 일련인
2022년 말에 국내등록을 받았으므로 대체규정이
적용된다. ④ '가족제지갑' 에 대해 출원일 소급으로
인정하므로 2022.3.1 출원일과 같다.

4 선출의해결

① '가족제지갑'은 대체규정이 적용되어 2022.3.1,
② '재킷'은 2024.3.10.을 출원일로 하여
등록일과 판단한다.

II 선출(2)

1. 거절이유통지 대응방.

(1) ~~상표 34리 16항 7은~~ ~~인사~~ ~~일치~~

145

두문자만 및 선행상표권과 반은 위배, 1차원선등록
상표권과 동일유사상표를 동일유사상표가 출원한
경우 등록받을 수 없다.

(2) 상표 유사 여부 - 적극

① A상표 "Barbour" 과 B상표 "BARBOURS" 는
의견에서 대·외문자 차이가 있고 'S'의 유무 차이만
있음 뿐이므로 의견이 유사하고 ② 본징도 복내영어
보금수준에 비추어 말미에 '시' 발음만 차이가 나므로
유사하고 ③ 라틴어는 대버버라 있는 바, ④ 양상표는
복내 두문자에 출원공영어가 있는 상표로 유사하다

(3) 상품 유사 여부 적극

A 지정상품 '제킷' 과 B 지정상품 '가죽제킷' 은
품질, 형상, 용도 등 상품의 속성이 비슷하고 수요와 유통이
일치하는 등의 거래상정등을 고려할 때, 양 상품은
출원공영어가 있는 유사상품이다.

(4) 조각-거짓이유태양

① A의 '제킷'에 대한 출원일 (2024.3.10) 보다
먼저 등록 받은 B (2023.10) - B의 인용상표에
② 유사한 상품 'Barbour' 를 ③ 유사한 상품인
'제킷'에 출원해 있는 바, 앞 34호 1항 7번의 거지개는
타당하다.

2. 甲의 권리 ① - 무효성판정청구.

(1) 판정서정 (소법 342 268)

甲 등록여부 결정서 기재 기능표를 신질서커 甲의 등록은 무효한 수 있다.

(2) 무효성판 의의 취지 (소법 1172).

법정의 발부적 해결사단으로 이해관계인은 무효사유를 주장하여 무효성판 청구를 할 수 있다.

(3) ~~7 무효성판의 신청기간~~ 판정서정

1) 의의 취지

소권자보호 및 신사용자보호를 위해 국내의 등록자에게 특정인의 출회로 인하여 상표의 동일 유사성으로 부정판 불격을 가한 출회한 경우 등록 말도 수 있다.

2) 무효성판의 인정도판단.

무효성은 국내에서 알려지지 않았지만 2022년부터 영국에서 부터 출회로서 널리 알려져 있었다.

3) 국외 부정한 무적여부판단

① 외국에는 "신사용상표의 인지도, 착각도, 양상표의 유사정도, 당사자사이의 구별유무, 신사용상표간격의 시공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는지 여부, 양상표의 유사성, 게재일정 등은 종합하여 판단한다" 라고 한다.

② 사안의 경우, 무효성은 영국에서 출회로서 인정되고, 양상표는 유사하지만 따라 그는.

국내 출판 권리를 양도하기 위하여 권리를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양도상품은 유사하다는 사정이 비추어 보면, 2에게는 甲의 국내시장권으로 지지할 목적으로 부정행위를 가진채 출원 하였다.

4) 소견.

영국에서 甲출처로 인정된 상표인 유사한 상품으로, 甲출처를 지지할 목적으로 출원한 등록상표는 상표법 34조 1항 13호의 무효사유가 있다.

(4) 상표법 34조 1항 13호의 무효-거부

1) 권리-거부.

계약관계에 있던자가 甲이 사용·사용준비 중인 상품으로 양도한 경우 등록상표도 없다. 신의성실원칙을 반영한 규정이다.

2) 소견.

- ① 甲과 수임판매 계약에 있던 것이 ② 甲이 국내시장 준비 중인 것으로 인정하면 ③ 甲상표인 유사한 상품으로 ④ 유사한 상품인 '가죽재 지갑'에 출원 하였으나, 甲의 무효사유가 존재한다

(5) 상표법 34조 1항 13호의 무효-거부

1) 권리-거부

2013년 12월 31일에 등록된 상표인 유사한 상품으로



계약관계에 있었던 자가 권리의 동등성이 동일하다
상등이 순위안정우 동등이된다. 따라서 6의7 분배
규제이다.

2) 시안

① 영구권이 동등이 있던 甲상등과 ② 유사안상등
'BARBOURS'를 ③ 甲과 무양·판매 관계에 있던
2이 ④ 甲의 동등성이 ⑤ 유사상등 '가죽제재킷'이
준인 하였으므로, 본인이 무양매가 존재한다.

(6) 조경

이해관계인 甲은 계약기간 끝나면, 13년 이상 13년,
20년, 21년의 무양매를 주장하여 강등으로 전이될
수 있다.

3 甲의 권(2) - 공조 동등이 이유 (남 43리 이상 70년)

강등은 유사방위의 상등으로 순위안 甲은 권의 권리
동의를 받아 동등 도모안수 있다

4 甲의 권(3) - 포기양도 경우

~~강등에 무양매가 있는~~ 해를 안다. 포기
양도. 전위한다

5 甲의 권(4) - 상사정리 (남 70리 이상)

무양상정리 박정권까지 상사정리로 주 6년 20%
반한다 있다 "결"

20.5

[문제 -2]

I 선택(1)

5.5

1. 정제안 출원유형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모형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우수한 농산물 생산자와.

유형양자가 설립하는 법인 또는 "보성농차"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2. 출원절차. (법362)

① ~~모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임은 명백한 상품등록 출원서인

②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 (법362 3항), ③

지리적 표시의 정의를 인척함은 증명하는 서류 (법362 5항)을 첨부하여 출원하여야 한다.

3. 등록가능성. - 33조

(1) 법33조 1항 3호, 4호

'보성농차'는 '산차', 또는 '한제안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품이 해당한다.

(2) 법33조 3항

33조 1항 3호 (상지표 명칭), 4호에 해당하면 표장이라고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3) 법33조

'보성농차'는 33조 3항에 의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4 통기등성 - 2조, 3조

(1) 정액규정 (2조 1항 6호)

① 보성군은 동해양양기후대 예측성기후가 맞물려있어 강수량도 많고, 햇빛과 그늘이 적당히, 만들어지는 조건을 갖고 있어 녹차의 품질이 본질적으로 보성에서 비롯된 경우다. ② 보성군에서 녹차를 생산하는 영가산 유동은 영가가 공동으로 소유한 영인 甲이 직접사용 하기 위한 포장에 해당한다 ③ 따라서 영가산 만작한다.

(2) 출원인적정 (3조 2호)

보성군에서 녹차를 생산하여 있는 영가산 유동은 영가산 공동으로 소유한 영인 甲은 등록받은 수 있다.

5 식물지적

甲이 출원절차를 지켜 서류제출은 만족한다면 **등록받은** 수 있는 것이다.

6.5

6 보물(2)

1. 2조 34조 1항 10호, 14호 관복 - 2조

같은 보성군에서 생산하는 영가산이므로, 경쟁인 사용권이 해당하여 일련의 거적이유는 없다.

2 2조 34조 1항 8호 관복 - 3조

(1) 타의 취거

거리적특이성개표장건재바 수역의 반크 위어 동일유사
상표권 동일이다고 인정한 상표이 등록받지 못함

(2) 표장의 동일유사판단 - 적극

① 거의 상품 외용은 거리적 혼회 될 가능성이 높지 못함, 그 결과로 거리적 혼회 당시 식별력 강해 되는 것도 아님.

② 바의 표장 '보성농사'는 거리적 혼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③ 이 표장의 거리적 특이성은 수역에 대한 특별한
(인정특이) 특이성으로 양상표는 수역에 대해
회화될 여지가 있어 위임이다.

(3) 보지

거리적특이성 유시안 상표권 동일안 상표 '보지'
에 혼회 판권을 갖지 못함 반크에 해당한다.

3. 상표권 (보지) 판권 - 적극

(1) 타의에게

동등인 여지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지 못함
수역에 대한 위임이다

(2) 본인에게

'보지'로 인하여 보지에서 나는 보지로 동등인 여
지가 있다. 보지의 상표권 보지로서 보지
보지해결된다

4 사본의 비문

그 후의 법 제 42 조의 8 단. 12 단 제 201 조 제 2 호

문헌의 비문이다.

사본

12

사본



[문제-3]

1. 식별(1)

1. 주원료인 양귀비, 한 종류 - 겨우

(1) 식별 취미.

식별력이 많은 상품은 통관을 보지 않고 수입과 분포를
위험하다.

(2) 상품적 판단 방법 (특이성)

표장의 간명, 거장상호의 간명, 거장상호 등도
중요하며 개인적으로 판단하여, 1년 이상
상품 식별력이 있거나 공익상 특이하게 동경시키기
목적등인 경우에 해당하여 판정된다.

(3) 시안.

1) 제타상품 식별력 - 소극

① 단박대장은 '바로 대장 해준다는' 간명을 갖지 않거나

② 대부양려의 간명에서 상품인 성격은 격감시킬 수

있고 ③ 제타년후에 거장대출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거장상호를 고려하면 ④ '제타'는 제타상품 식별력이
있다

2) 동경적용 - 소극

대부양려에서 혼동에 사용한다 있는 표장이므로 ④에게

동경시키는 것이 목적등하다.

기타

甲상품은 '대박임'의 성격인 걱정사키는 것으로 식별력이
있어 상 개척(상)은 약 7년에 6년이다.

2. 甲이 등록을 위한 3회 - 첫 333로 26년

1) 인식, 취지

사용자의 인지로 개척한 26년의 출원권 부터 사용인 지로
특정인의 출회로 식별하는 등 있게 된 경우에는 사용
상품이 반정하여 등록받은 것이다.

(2) 해석방법 (회색)

특정인에게 특정사키가 보적당한 표상이 대박임 권리로
부여하는 것으로 그 기권을 연결하여 해석해야
한다.

(3) 상 개척(상)은 약 7년에 6년 해당 - 적극

'대박임'은 권. 기권이 해당한다.

(4) 출원권 부터 사용 - 적극

출원일 (2025. 4. 6) 전부터 해상권 (2019. 10) 리드
에 '甲상품을 사용 하였다.'

(5) 특정인의 출회로 인식 - 적극

1) 판정방법 (회색)

상품의 사용 실적, 기간, 상품사용자의 명성도, 출회
경쟁적 사용정도, 광고 판매 기간, 판매역사,
비유 등을 종합하여 특정인의 상품이 인식
출회로 확하는 것으로 식별하는 등 있게 된 판정한다.



2) 실사용광고 사용/상징거래부(특제)

주요인상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품을 독립적으로
사용하여 부리인식가능 있는 경우, 그 사용 실적을
식별력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3) 사안

① 'A 상품'을 출원한 계통에서 사용만 했다. 2025년
초 대우에게 3위로 자리 잡았다. ② 또한 2020년
부터 '산악여행은 인터넷' 부본과 '전반' 부본과
적합한 상품을 '만박대출'과 같은 식으로
표시하는 등 부리인식 할 수 있게 사용하였다.

③ 이러한 실사용상표의 사용/상징은 거래하여 보면
광고를 10만건 이상, 500억 이상 비용을 들여.
부본은 식별력을 취득 하였다.

(6) 사용만 상품인거-적극

대출해주는 영영인 대우에게 계속하여 사용한다

(7) 이거

'A 상품'은 출원일(2025.4.6) 전인 제19번부터
계속하여 사용한 적과, B 상품이 런던 출원된
해는 적고 식별력에 되어 '대우영'이 33226영
등록번호가 있다.

3 실용의 이거

① 상하관 판다의 대우영 (가)은 등록을 위하여 출원

2항을 중개이 아닌 일종으로 볼 수 있다.

55

4. (별문2)

1. 침해성량면

- ① 유문만 4항과 ② 동일 유사범위에서 ③ 상표로서 사용된 것은 ④ 다른 정당권인이나 한정제한 사항이 없는 경우 ⑤ 4항 침해가 성립한다.

2. 경쟁금지

- ① 2이 '특별영역' 2항을 사용하든지 유사상표 인리 ② 한정제한 사항을 주장한다 인리 정한다.

3. 유사상표인리 여부 - 333

(1) 유사상표인리 (333)

상표의 의미, 관련, 형, 관련으로 전체적, 가리, 이적, 으로 간판하여 소비자들에게 출처부동은 일으키는 의무를 부담한다

(2) 영위의 개념 및 피위성 (333)

전체적으로 전체인찰은 해야 하지만, 독립하여 출처표시 가능한 수반하는 부분, 즉 영위가 있는 경우 진정한 전체인찰의 결과는 영위에 의해 의무를 대비하여 간판한 피위성이 있다.



(2) 사안

'간박제척'은 기술적 특징이지만, 위상표 '간박제척'은
표준 제척 규정으로 등록 받았으므로 ~~특권이 제척력이 있다~~

∴ 특이성은 특권이성립한다

5. 특이성이 없는 권리

(1) 특이성이 없는 권리

무엇 청배권리특수 (특107조) 청배배상특수 (특109조)
신용특수특수 (특117조) 특대이득연인특수 (민법
741조)를 취안 수 있다

(2) 특이성이 없는 권리

특이성이 인정되는 경우, 무엇 청배리 (특272조)
무엇 (특276조) 양자특수 (특275조)를 취안 수 있다.

"결"

[문제-4]

I (2문)

1. 무한상환 (보통 1172)

보통의 만물 것 처럼 하며, 이비관계인은 무한상환
처우한다 있다

2. 저이 이해관계인인지-정답

저은 ~~보통~~부터 45% 이상 소유하여 관여하고 있는
자로, 저에게 동상환하기 위한 위임권도 있으므로 2동상환
조항에 적절함. 반드시 이해관계인 이비관계인이다.

3. ~~보통 342~~ 1항 20은 무한상환 조항-정답

(1) 저의 취지

신의성실의 원칙 만능만 취하므로, 계약관계에 관하여
동일 위시상환으로 동일하게 상환하기 하였으나 저의
동조항도 무효다.

(2) 저의

저은 무리 부담-편에 계약에 있던 것도. ~~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알면서 유시상환 상환 시
유시상환 상환 시에 포함하여 보통에 해당한다.

4. ~~보통 342~~ 1항 20은 무한상환-정답

(1) 저의 취지

타인으로부터 받은 만능만 취하므로 ~~전액상환~~ 상환
동일 위시상환으로 계약관계 있던 것 동일상환



중대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하지 않거나

(2) 사실은.

2025년 5월 7일 일요일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인하여 양이 계약, 판매 계약 관계에
있던 것이 무효한 상품 Y'이 출원되었으므로,
발원이 배당한다.

4. 취외유경도.

이해관계인 측은 취외상표 청구한 수 있지만, 부정사용이
불사용의 정황이므로 취외배가 없다.

5. 무효원인.

이해관계인 측은 제각기 다른 용 342 60 206,
리본을 주장하여 무효사유 청구한 수 있다.

45

판례문(2).

1. 배당되는 거점유 - 출 352.

선출원 상표인 리본 등의 유사한 상품 X를 유사한
상품에 출원하는 경우 등록만으로도 양이.

2. 부인회칙 ① - 정외계법 (492) 이의신청 (602)

(1) 인용사유 비결시 기준 (출 352 308)

출원이 거점점점 환경인 경우 허용되지 않으므로 양이
문단

(2) 정비계약 (법 492) 대리상 (법 602)

특허청장에게 중재청에 제재이유가 있다는 것을
제출하는 것이다

(3) 사안

본은 특허청장에게 2의 철회이는 742 1항 2단,
21항에 비대응하여 제재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하여 소멸은 도모하는 수이다.

3 원리 권회 2 - 조약위반진정(법 462)

(1) 이유

조약당사국 상호준수의 같은 상호를 포함하여
유사한 주장에 관하여 법 352 위반이므로 그당사국
추진할 수 있다.

(2) 사안

① 조약당사국인 일본에서 본 등항상표는 최상급
장표로 만족하고 ② 6개월이내에 한국에서
출시하였으므로, 조약위반 주장할 수 있다.

③ 2025. 2. 14로 소멸하므로
법 352

제재이유는 국외이다.

4 원리 권회 3 - 출원 포기. 양도권

2에게 제재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러한
양도권 소멸하는 이유 없다

[문제-1]

I. 설문(1)

6

1. 국제출원의 지위

(1) 法180조 1항

국제출원은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지정한 경우 우리나라 출원으로 인정된다.

(2) 사안

영국에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포함하여 국제출원하였으므로 상기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상표등록출원으로 인정된다.

2. 국제출원일의 특징

(1) 法180조 2항, 의정서 3조 4항

국제출원의 국제등록일은 출원일로 보되, 의정서에 따라 본국관청 접수일을 국제등록일로 인정할 수 있다.

(2) 사안

영국 특허청에 2024. 3. 10 접수되고 2개월 내인 2024. 4. 10 에 국제사무국에 접수된 바, 2024. 3. 10 이 국제등록일이자 우리나라 출원일로 인정된다.

3. 대체

(1) 法183조

우리나라에 선출원, 선등록 상표가 있는 경우 2점 요건



하에서 출원일은 우리나라 출원일로 소급한다.

(2) 대체의 요건

① 국제등록 영의인이 상표권자라 동일하고, ② 국제출원상품과 국내 등록 상품이 동일하여 ③ 영역해장동지 효력반생일 이전에 국내 등록되었어야 한다.

(3) 개정법 - 일부 상품

개정 상표법은 국제출원라 우리나라 등록의 지정상품이 일부 중복되는 경우에도 중복되는 상품에 대하여 대체를 인정하고 있다.

(4) 사안

① 주체가 甲으로 동일하고, ② 상표로 'Barbour' 로 동일하여 ③ 우리나라에서 2022년 말에 등록된 후 2024.3.10 국제등록된 바, 대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④ 중복되는 상품인 '가죽제 지갑' 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출원일인 2022.3.1로 대체 효력을 인정받는다.

4. 결론

① '가죽제 지갑'은 2022.3.1을 출원일로 하여 등록요건 판단된다.
② 그의 상품은 2024.3.10을 출원일로 하여 등록요건 판단된다.

II. 설문(2)

1. 조치 ① - 무효심판 청구

13.5

(1) 인용상표 소멸시 취소 - 법 34조 2항

법 34조 1항 7호는 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바, 등록여부결정시 이전에 무효, 취소 등으로 선등록상표를 소멸시키면 인용상표로서 지위를 제거하고 등록을 도한 듯 있다.

(2) 법 34조 1항 20호 무효사유 (적극)

타인

1) 의의, 취지

타인과 일정 관계에 있는 자는 유사범위에서 등록을 불허하여 권리자가 아닌 자의 선의익에 반하는 등록을 배제시킨다.

2) 사안

① 乙은 영국에서 甲으로부터 의류류 수입하여 판매하던 자인 바 甲과의 선의관계가 인정되고, ② 甲이 국내 사용을 준비 중임을 인지하고도 출원한 것이다. ③ 甲의 상표 'Barbour'와 乙의 상표 'BARBOURS'는 모두 문자상표이고 乙에게 의하면 문자상표는 획형이 가장 중요한 것이 거래실정으로 인정되는 바, 양 상표는 각각 '바버', '바버스'로 획형된 것이므로 획형 면에서 유사하다. 또한 타인 역시 맨 마지막 문자 제외하고 동일하여 유사하여 관영 또한 동일 한 바, ④ 양 상표는 출원 후의 영려가 있는 유사상표이므로, ⑤ 乙 출원상표는 법 34조 1항 20호 인정의 무효사유가 있다.

(3) 법 34조 1항 21호 무효사유 (적극)

1) 의의, 취지

조약 당사국에 등록된 상표는 타인과 일정 관계에 있는 자가 유사범위에서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하여, 국제적인 수준에서 신의칙에 반하는 상표등록을 배제시킨다.

2) 사안

① 甲상표는 조약당사국인 영국에서 2023. 9. 1 등록되었고,

② 甲으로부터 의류를 수입. 판매하여 甲이 국내 진입 예정 사실을 인지한 乙은 甲과 신의관계가 인정되는 바,

③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등록받은 乙의 상표는 특. 34조 1항 리는 무효사유가 있다.

(4) 소결 - 소결가능

乙의 등록상표는 특. 34조 1항 2호, 리는 무효사유가 있는 바,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인용상표로서 지위가 소멸하여 甲이 등록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조치 ② - 공표동의서 제출

(1) 상표공표동의서 제도 의미, 취지 - 특. 34조 1항 1호

선등록상표와 유사범위에서 출원하였다면 선등록 상품권자에게 동의를 받으면 동일상표, 동일상품이 아닌 한 등록받을 수 있다.

(2) 사안

甲과 乙의 상표가 유사범위 내이므로, 甲상표의 등록여부 결정 전까지 乙로부터 공표동의를 받아 공표

등의서를 제출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다.

3. 조치 ③ - 상표권 포기 또는 양도 권유

그 상표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근거로 상표권 포기, 양도를 권유해 볼 수 있다.

4. 조치 ④ - 심사절차 중지요청 (지법 70조 1항)

거절결정을 유보시키기 위하여 그 상표가 무효확정되거나 상표권 포기 등이 된 때까지 심사절차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5. 빠른 등록을 위한 조치 - 출원의 분할 및 삭제보정

(1) 출원의 분할 의의 및 개정취지 - 지법 187조

개정 상표 법은 국제출원인의 편의나 불경제 방지를 위하여 국제출원의 분할을 허용했다.

(2) 사안의 경우

甲은 그 등록 지정상품인 '가죽제 재킷'과 비유사한 상품인 '가죽제 지갑'에 대해서 분할출원하고, 원 국제출원인에서 삭제보정하여 빠른 등록을 도모하는 한편 '가죽제 재킷'은 그 상표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 기다려 등록을 도모할 수 있다.

[문제-2]

I. 서문(1)

1. 적절한 출처의 유형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의의, 녹지

지리적 출처를 표시하는 단체표장이 소정 요건 하 등록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리적 표시에 관한 단체 및 그 단체원을 보호한다.

(2) 사안의 경우

보성군에서 녹차를 생산하는 당사들과 그로부터 녹차를 납품받는 유통업자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보성녹차'에 대하여 상표법상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가능성이 적절하다.

2. 출원의 적자 및 등록가능성

(1) 정의규정 항위 여부 (적극)

① 상품의 특정 품질, 명칭 등의 자연적, 인적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하여야 한다.

② 사안의 경우 보성군의 기후적 조건으로 보성에서 생산된 녹차의 품질이 우수한 것인 바, 지리적 표시의 정의규정을 충족한다.

(2) 주체적 요건 충족 여부 (적극)

① 법 32 2항에 따라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이야 한다.

② 사안의 경우 보성에서 옥사를 생산하는 자 및 그를 납품받아 유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이 출원하였으므로 주체적 요건을 충족한다.

(3) 제출서류 (법 36조 3.5항)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서,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 지리적 표시 정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제출해야 한다.

(4) 특유 거절이유 (법 54조) - 2점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이미제하였거나 2점
단체원의 실질적인 가입을 불허하는 정관 등의 특유 거절이유는 보이지 않는다.

(5) 법 33조 1항 3호, 법 33조 1항 4호 - 2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법 33조 1항 3호의 산지 표시와 법 33조 1항 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더라도 불충 규정의 적용이 없는 바, 법 33조 및 법 34조의 거절이유가 없다.

(6) 소결 - 2점가능

甲 단체가 제출서류를 잘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인 한, 해당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등록 가능하다.

II. 식문(2)

5.5

1. 지표 34조 1항 8호 해당여부 - 적극

(1) 외의 및 유사

타인의 선등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과 저속되는 표장은 등록 불허하며, 선등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의 이익 보호 및 수요자 혼란을 방지한다.

(2) 표장의 유사여부 - 적극

사안의 경우 '보성녹차'와 '오리문'이 결합한 상품에서 '오리문'의 결합으로 인해 '보성녹차'의 지리적 출처표시기능이 강해되지 않는 바, 2의 출처상표는 선등록 표장인 '보성녹차'와의 관계에서 지리적 출처혼동 염려가 있으므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3) 소정 - 거절이유 없음.

甲의 선등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유사하여 본 소정의 거절이유가 있다.

2. 지표 34조 1항 10호 및 14호 해당여부 - 소극

본 호의 '타인'은 해당 지역의 정당한 당사자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본성 지역의 정당한 생산업자인 2은 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이 본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지표 34조 1항 12호 전란 해당여부

(1) 의의, 속지

품질요인 명제가 있는 포장의 등록을 불허하며 수요자의 품질요인을 방지한다.

(2) 사안의 경위

2은 전방 보성군에서 녹차를 생산하던 '리온'에 바뀐 지리적 표시 표시기능이 없는 바, 2의 포장은 사지에 관한 요인 명제가 없이 불허에 ~~대응하지 않음~~

8.5

8.5
[문제-3]
I. 기본(1)

1. 3항 3항 1항 3항 해당여부 -적극

(1) 의의, 속지

기술적 포장은 자타상품식별력이나 특질적응성이 없으므로 등록을 불허한다.

(2) 기술성의 판단기준 '세시제'

관념과 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사안의 경위

① '관박대술'은 증시, 빠르게 증을 뜻하는 '관박'에

'대술'이 결합된 상품으로서, ② 지정상품인 '관박'의

과의 관계에서 '관박에 대술', '증시 대술' 등의 의미로

직관적으로 인식되는 바, ③ '직접대술방식'으로 운영하는

대부업 거래실정 등을 고려하면 본호 소정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2. 법 33조 1항 7호 해당여부 - 적극

(1) 의의, 속지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는 자라상표식별력 및 특징적응성이 없으므로 등록을 불허하며, 법 33조 1항 1호 내지 6호의 반용사 규정이다.

(2) 사안의 경우

甲출원 상표의 간명, 지정상표와의 관계, 거래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부업과 관한 혼란 표현방식으로 특별히 도안하진 상표로 아닌 바, 본호 거절이유가 있다.

3. 소결 - 심사관 판단 타당

법 33조 1항 3호 및 7호의 거절이유가 존재하므로, 심사관의 판단은 타당하다.

4. 등록을 위한 甲의 조치 ① - 법 33조 2항

~~(1) 조치 ① - 법 33조 2항 주장~~

(1) 의의, 속지

법 33조 1항 3호 내지 7호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허용한다.

(2) 출원 전부터 사용여부 - 적극

甲은 상표출원 전부터 대졸 영입에 관하여 甲상표와 동일한 '단박대졸' 표장을 사용하였다.

(3) 특정인의 출처로 식별된 것인지 여부 - 적극

1) 심사용상표 사용실적 고려범위 확대

출원상표와 동일하거나 동일성이 있는 독립성이 유지되며 분리인식가능한 경우에는 일부 구성요소가 부가된 상품의 사용실적도 출원상표의 인식도 판단에 고려가능하다.

2) 사안의 경우

① 甲은 '단박대졸'에 '인터넷' 또는 '전화'를 부가하여 사용하였으나, ② 이는 거래실정 상 흔한 표지이고

③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수요자들은 '단박대졸'을 분리인식하였을 것이며 ④ 동일성과 독립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다. ⑤ 따라서 심사용상표라

심사용상표 2의 사용실적을 삼작할 수 있으며, 당해 상품의 광고횟수나 공인비용 및 기간을 검토하면

⑥ 이 사건 상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누락하였다.

(4) 사용상표를 사용상표에 출원 여부 - 적극

甲은 출원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인 '대부업'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한 이력이 있다.

(5) 연결 - 간접적으로 양상 추상가능

甲은 사용증거를 제출하여 본 규정을 추상가능하다

5. 甲의 상표등록을 위한 권리 ② - 신규출원

甲은 '단박대술' 문자상표를 도안하하거나 식별력을
있는 도형과 결합하여 신규출원을 통해 권리를
도모할 수 있다.

II. 식문(2)

1. 상표권 침해 성립여부

(1) 상표권 침해의 및 성립정리 - 신 18조 1항

① 등록상표의 유사범위 내에서 무단사용은 상표권 침해이다.

② 사안의 경우, 甲 상표는 등록되어 있음 유효하고, 乙의
상표 사용은 상표적 사용으로 제시되었으며, 乙에게
별다른 정당권원을 취득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③ 이하 범위 내 사용여부, 효과 제한사유, 권리남용을
검토한다.

(2) 범위 내 사용여부 - 적극

1) 乙 상표 모부 - '단박대술'

乙 상표는 '웨킹글', '퀵' 등 부가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으나
이는 부가적인 요소로서 '단박대술' 부분의 식별력을 강대
시키지 않으며, 甲이 '단박대술'을 사용하여 식별력을
강화시킨 효과가 乙상표에로 미치는 바, 乙 상표의 모부는
'단박대술' 이라고 보이 타당하나.

2) 대비 판단 - 유사

乙 상품의 요부가 甲 상품인 '단백대술'과 동일하여
양 상품은 속서출등의 열려가 있으므로 유사상품이다.

(3) 효력제한 여부 - 2주

1) 등록 전 사용에 의해 식별력 취득 사례

상표권자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 등록받은
이상, 상표권자는 해당 상품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득점하는 바, 식별력이 존재 없던 상품과 같더라도
특 90조 1항 2호 등의 효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2) 사안의 경우

甲 상품이 특 33조 2항에 따라 등록된 바, 이는 '단백대술'
부분이 기술적 포장이라는 이유로 특 90조 1항의 효력
제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4) 권리남용 항변 여부 - 2주

甲 상품이 본질적으로는 식별력이 없으나 특 33조 2항에
따라 적법 등록된 바, 이는 권리남용 항변도 불가하다.

(5) 소멸 - 침해성립

乙의 사용은 침해가 성립하여 각종 항변으로 불리한바,
침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2. 상표법상 조치

(1) 민사상 조치

본은 침해 성립을 이유로 특 107조 침해금지청구,

법 109조 손해배상청구 및 법 113조 신용회복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사전적 조치로
민사집행법 300조에 의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할
수도 있다.

(2) 형사상 조치

甲은 乙을 법 230조의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3) 기타 조치

사전 경고, 적극적 권리방위책인 상판 청구 (법 112조),
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741조)를 검토해 볼 수 있다.

[문제-4]

1. 설문 (1)

1. 조치 ① - 무효상판 청구

(1) 법 342 1항 2호는 해당여부 - 적극

① 乙은 甲의 상품을 수입 판매하였던 자이므로 신의관계
있고 ② 甲이 국내 사용 준비 중이었다고 乙이 이를 알았
다면 ③ 상표, 상품 유사범위에서 출원한 乙의 상품은
법 342 1항 2호는 乙의 무효사유가 있다.

(2) 법 342 1항 2호는 해당여부 - 적극

① 甲의 상품 X는 상품 Y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주요당사를
일부에서 등록되었으므로 ② 甲과 인정 신의관계가
있던 乙이 ③ 甲의 동의도 없이 ④ 유사범위에서

출원한 乙상표를 국제적인 신의사에도 반하여 은등343
1항 리항의 무효사유가 있다.

(3) 무효상판 적부 - 적극

丙은 甲의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므로 乙의
상표권의 대항을 받을 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인바,
출원인 적격이 인정된다.

(4) 소결 - 상표권가능

무효사유가 주장되고 무효상권이 확정되면 乙상표가
상표권으로 인정된 것이다.

2. 조치 ② - 상표권 포기. 양도권유

상표권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근거로 상표권 포기. 양도를 권유
해 볼 수도 있다.